

Vol. 05

2024.05. 13.

Customs &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140

F. 02-545-1682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장진명본부장 jmjang@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김민혁전임 mhkim@hjcustoms.co.kr

CONTENTS

- I. 법령 개정사항
- II. 입안 예고
- III. 조세심판사례
-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I. 법령 개정사항

1.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 관세법 제233조의2(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개정사항 반영
- 인증수출자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굴된 기업의 규제애로 사항 해소
- 인증 효력상실 사유 추가 및 인증취소를 위한 청문절차 구체화
- 「행정조사기본법」에 규정된 행정조사 절차 규정에 맞게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서면확인/현지확인) 업무절차 정비
- 별지서식 수정 및 신설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목적 / 인증지원 (제1조 / 제3의2조)	관세법 제233조의2에 규정된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고시에 반영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및 심사 (제13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품목별 인증연장에 따른 비용·관리부담 해소를 위해 보유중인 품목의 인증을 일괄 연장하고 인증만료일을 통일할 수 있게 개선
인증사항 변경신고 (제14조)	개인사업자의 포괄양수도를 통한 법인전환시 신규인증 절차 없이 변경신고만으로 인증승계가 가능하도록 규정 명확화
인증 효력상실 (제15조)	인증수출자의 인증취소 신청을 효력상실의 사유로 추가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제17조)	업체에 서류제출 요구시 신설 서식으로 요청 서면/현지확인 완료 시 7일 이내에 신설 서식(별지 제12호)으로 그 결과를 대상업체에 통지
인증취소 등 (제19조)	인증수출자의 인증취소를 위한 청문시 통지대상자의 청문 일자 조정 요청 규정 신설 및 청문통지 서식 신설

(3) 시행일

'24.04.04.

I. 법령 개정사항

2.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월별납부 승인 요건 추가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월별납부업체의 승인 (제3조)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월별납부 승인 요건 추가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7조에 따라 과세자료 등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사실이 없는 자

(3) 시행일

'24.04.05.

I. 법령 개정사항

3. 「약사법」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응급환자 등이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영업 실태 파악 등을 위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의 재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위탁자인 의약품공급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는 한편,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의약품의 불법 거래가 지속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온라인 공간에서의 의약품 등 불법 판매·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제21조의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품외품을 판매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의 취소 및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함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등 (제34조의6)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응급환자 등을 치료하려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외국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제46조의3)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그 종사자가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약품등의 판매질서 (제47조)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할 수 없도록 하며,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규정함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판매촉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위탁한 의약품공급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

<p>의약품 불법판매 및 알선 등 금지 (제61조의2 / 3)</p>	<p>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약품 불법판매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모니터링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p> <p>약품 불법판매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의약품에 대하여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p>
<p>자율규제 (제67조의2)</p>	<p>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하는 사단법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p>
<p>소비자 교육 및 홍보 (제83조의8)</p>	<p>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가 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등의 판매, 구매, 표시·광고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p>
<p>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불법 판매 등 방지를 위한 연구 개발 지원 (제83조의9)</p>	<p>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등의 불법판매의 알선·광고와 관련된 현황 조사, 효율적 모니터링 기술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p>
<p>벌칙 (제94조)</p>	<p>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p>
<p>벌칙 (제95조)</p>	<p>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에 관한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p>

(3) 시행일

'24.04.19.

I. 법령 개정사항

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 수출물품 포장작업의 분업화 등 산업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국내 생산 수출물품에 사용되는 포장용품은 포장작업 수행 주체와 상관없이 환급 대상 원재료로 인정하여 수출기업 지원 강화
- 중소 제조기업이 수출자로부터 수출금액 등의 정보를 받지 못해 간이정액 환급을 신청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 개선 필요
-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 절차 간소화 및 그 밖에 제도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국내생산 수출 물품 포장용품 환급등 신청 (제7조의2)	국내 생산 수출물품에 사용되는 포장용품의 환급대상 원재료 인정 범위 확대 - 국내에서 생산되어 완성된 수출물품을 제조자가 아닌 수출자 등이 포장한 경우에도 해당 포장용품에 대해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
간이정액환급 유효 적용대상 (제31조)	수출물품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공급한 금액(국내 공급금액)으로 간이정액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 생산자는 국내 공급금액을 사용하여 간이정액환급 신청가능 - 국내 공급금액 확인 서류로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규정
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 (제49조)	수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월 단위)을 고려하여 국내거래 양도일자 확인 서류 개선 - 세금계산서 월 단위 발행 업체의 국내거래양도일자 확인 서류로서 세금계산서 외에도 거래명세서 등 추가

간이정액환급율표 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별지 제16호)	간이정액환급율표 비적용승인일 소급 적용 신청 항목 추가
수출유형별 수출 사실 확인방법등 (별표1)	해외구매자와 수출계약을 위하여 무상으로 수출하는 견본용 물품 등에 대한 수출 사실 확인 서류 명확화
환급신청기관 변경신청서 (별지2호)	환급신청기관 신규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최초 환급업체도 전자문서로 환급신청기관 신청

(3) 시행일

'24.04.22.

I. 법령 개정사항

5.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 해운업계 건의를 반영, 선적지연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국내 제조 철강류의 선상수출신고 대상 추가
- 수출물품 적재 이행관리의 혼란 방지를 위해 B/L 등 선적서류가 발행되지 않는 수출물품의 적재이행 방법 추가 신설
- 관세법, 행정규칙 및 국제상거래조건(Incoterms) 개정 사항 반영
- 고시 개정 등을 반영한 수출신고필증 서식 수정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선상수출신고 대상 품목 확대 (제32조)	벌크선에 적재하여 수출신고하는 국내 제조 HS 제72류 철강류에 대해 선상수출신고 허용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출물품의 적재확인 절차 (제48조)	선박(항공기)용품이 아닌 물품으로서 B/L 등 운송서류가 발행되지 않은 수출신고수리 물품의 적재확인 및 등록 방법 마련 신고인 등의 적재 확인 요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에 세관 직원의 확인을 표시하는 적재확인(날인) 신규 제작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INCOTERMS 2020개정 사항 반영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5)- 49 에 기재되어 있는 INCOTERMS 2000과 INCOTERMS 2010을 INCOTERMS 2020으로 수정
수출신고서와 관련된 관세법, 행정규칙 개정(폐지) 사항 등 반영	관세법 제250조 제4항 신고취하 승인 기간(1일 → 10일) 개정사항 반영 (제27조 제2항)
	기획재정부훈령 「세관특수청인에관한규정」 폐지 반영
	비공개 훈령 적시 조항 및 문구 삭제
수출신고필증 및 간이수출신고필증 서식 하단 기재 사항 변경	적재기간이 경과된 반송신고수리물품에 대한 신고수리 세관장의 조치 예정 사항 추가
	수출신고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 변경(portal.customs.go.kr → unipass.customs.go.kr) 사항 반영

(3) 시행 일자

'24.04.29.

I. 법령 개정사항

6.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에 위탁하였던 화학물질확인 내용의 접수·관리, 화학물질확인증명 신청의 접수, 제출된 자료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87호, 2024. 4. 2. 공포, 2025.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제조·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조·수입 화학물질확인 증명신청서, 제조·수입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자료보호신청서 등의 서식에 규정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를 ‘한국환경공단’으로 정비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업무와 화학사고의 예방·대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화학물질 확인 (제2조)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제3조)	"협회"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의 장"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화학물질통계조사 등 (제4도)	"협회"를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한다.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제12조)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검사기관 등 (제22조)	1. 한국환경공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 (제53조)	"협회"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는"을 "한국환경공단은"으로 한다.

(3) 시행 일자

’24.04.30.

II. 입안예고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입안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허가, 인증 또는 신고의 면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코로나 팬데믹 등 국가적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등의 면제 (제10조)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시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의 요청 방법·절차, 인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등의 면제 (제32조)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시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의 요청 방법·절차, 인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의결수령기간

'24.04.29.

II. 입안예고

2.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1) 입안 이유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 5 조제 1 항의 세율적용 우선순위 개정 내용을 반영한 고세율원재료 정의 보완과 고세율원재료 제조가공 사실확인 제출 서류의 간소화를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용어의 정의 (제2조의 2)	고세율원재료” 용어의 정의에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고관세율 부과 품목 포함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세율이 관세법 적용 세율과 같은 경우 FTA협정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도미에 따라, “고세율원재료”에 해당하는 수입농림축산물의 범위에 시장접근물량 초과 관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FTA 협정관세율 부과 물품 포함
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 및 확인 (제4조)	고세율원재료 제조·가공 사실 확인 서류 간소화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한 수출물품의 제조·가공 확인 서류로서 각서 제출을 폐지하고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 내용 정비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수렴기간

‘24.05.13.

II. 입안예고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입안 이유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 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20138 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상향된 과징금 금액을 반영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과징금 금액 (제19조의4)	위해 건강기능식품등의 판매량 × 판매금액 × 2배
차등부과 (별표1의2)	위반행위의 내용,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기준 마련

(3) 의견수렴기간

'24.05.14.

II. 입안예고

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입안 이유

고시 개정(안)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적합 기자재 보고·시정의무 및 국내대리인의 지정·대리사항 근거, 적합성평가 표시 간소화 등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절차 마련 및 대상기자재 재분류	자기적합확인 기자재의 서면 작성, 공개, 서류보관, 변경, 해지에 대한 절차 방법을 신설하고 대상기자재 재분류
부적합 기자재에 대한 보고·시정의무 세부절차 마련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중대 결함 등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 부적합 보고, 시정·수거 등 조치 계획 및 결과 제출, 부적합 기자재 정보 공개 등에 대한 절차·방법 신설
해외 제조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및 대리사항 명확화 등	적합성평가를 위한 국내대리인의 지정 근거 및 대리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당 절차 신설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개선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기자재와 포장에 모두 표시해야 하였으나,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 간소화
전파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 현행화 및 별지 서식 정비	전파법령 개정, 고시 조문 신설 등에 따른 조문 번호 및 관련 서식 등 현행화

(3) 의견수렴기간

'24.06.26.

Ⅲ. 조세심판사례

1. 쟁점물품(CONDENSER PARTS)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 8415.90-0000 호와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이 분류되는 HSK 제 7608.10-0000 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여부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20.7.13.부터 2023.4.4.까지 중국 소재 000 로부터 000(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000 15 건으로 쟁점물품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 8415.90-0000 호로 품목분류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이하 “FCN1”이라 한다)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음.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2.7.7. 수입신고번호 000호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 ‘수리 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이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이 분류되는 HSK 제 7608.10-0000 호(FCN1 3.7%)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8.17. 청구법인에게 위 분석결과를 안내하였음.

다. 처분청은 2022.8.23. 청구법인의 재분석 요청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쟁점물품의 분석을 의뢰하였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2022.12.7.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번호에 대하여 갑론 HSK 제 7608.10-0000 호(FCN1 3.7%) 및 을론 HSK 제 7616.99-9090 호(FCN1 3.7%)로 하여 회신하였음.

라. 처분청은 2023.1.2.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3.5.3.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이 분류되는 HSK 제 7608.10-0000 호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23.5.9. 청구법인에게 위 내용을 통보하였음

마.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K 제 7608.10-0000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5.26. 처분청에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부족세액인 관세 000 원, 부가가치세 000 원, 보정이자 000 원 및 가산세 000 원 합계 000 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음.

바. 그리고 청구법인은 2023.8.3.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 8415.90-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세 000원, 부가가치세 000원 및 가산세 000 원 합계 000 원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9.27. 이를 거부하였음.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수입 후 추가공정을 통해서 완성제품으로 만들어져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기조절기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합금되지 않은 알루미늄관이 최대중량을 가지는 반면 스크류 가공된 부분은 아주 미소한 부분에 불과하여 알루미늄관에 본질적 특성이 있음

(3) 결정일

2024.03.29 (조심 2023 관 0126)

Ⅲ. 조세심판사례

2.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17.10.4.부터 2022.10.5.까지 중국 소재 000(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 등으로부터 여성용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000 등 200 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 등이 발행한 송품장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음.

나. 처분청은 2022.10.6.부터 2022.10.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 등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3.8.7. 청구법인에게 실제 송금액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대한 관세 000 원, 부가가치세 000 원 및 가산세 000 원 합계 000 원을 경정·고지하였음.

다. 청구법인은 2023.8.17. 위 경정·고지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000 의 기재내용과 같이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납부기한 내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고 있음.

라. 청구법인은 2023.8.24. 및 2023.10.30. 처분청에 위 <표> 기재 부가가치세 전체 금액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9.21. 및 2023.11.1. 납부세액(제 1 차분 및 제 2 차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4호를 근거로 이를 거부하였고, 2023.11.1. 미납세액(제 3 차분부터 제 6 차분까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징수한 세액이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음.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현지법인은 실제 물품대금 등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송품장을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은 현지법인과 생산원가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있어 수입신고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등에 비추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3) 결정일

2024.03.29 (조심 2023 관 0134)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1. MOTOR CONTROLLER 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1.Digital AC Servo Controller - 감정22701-3960 (1989.12.11.) 2.SERVO AMP; MR-J4W2-77B; JP - 품목분류3과-7186 (2022.11.03.) 3.SERVO AMP; MR-J4-40A; JP - 품목분류3과-7187 (2022.11.03.) 4. SERVO AMP; MR-J4-40B; JP - 품목분류3과-7188(2022.11.03.)
물품 설명	전동기에 장착된 엔코더로부터 속도 등을 피드백 받아 전동기의 속도와 위치등을 자동 제어하는 기계
HS CODE	-변경 전 : ① 제8537.10-2000호 (8%) ②~③ 제8537.10-5090호 (8%) -변경 후 : ①~③ 제9032.89-9090호 (8%)
변경 사유	전자식 주파수 인버터는 자동제어용 기기로 보아 제 9032.89-9090호에 분류(WCO 제70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22년.9월) 및 제2024년 제1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4.04.11.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2. 태블릿 PC 용 Window Glass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COVER WINDOW FOR TABLET PC; GOYA_VE; TW1000152B; 중국 - 품목분류3과-1566 (2015.06.11.)
물품 설명	태블릿PC의 전면부에 부착되는 윈도우글라스로, 투명한 강화유리 원판을 제품형상에 맞게 절단, 홀가공한 후 테두리는 비전도성 차폐잉크(Black Matrix)로 인쇄한 물품(전기전도성 잉크로는 인쇄되지 않음)
HS CODE	-변경 전 : 제8473.30-9090호 (0%) -변경 후 : 제7007.19-1000호 (8%)
변경 사유	안전유리로 보아 제7007.19-1000호에 분류(WCO 제72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23.9월) 및 제2024년 제1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4.04.11.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3. Smart Watch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Black TANY6 Smart Watch - 품목분류3과-20132 (2020.12.11.)
물품 설명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동되어 시간을 표시하고, 스마트폰에 수신된 전화와 메시지 등을 진동이나 디스플레이를 통해 알려주며(전화 발신 및 수신기능은 없음) 심박수와 걸음 수 등을 측정하여 칼로리 소모량을 표시해주는 손목에 차는 기기
HS CODE	-변경 전 : 제9031.80-9099호 (0%) -변경 후 : 제9102.12-1000호 (8%)
변경 사유	통신기능(회신할 수 없는 전화 알림 수신등)과 측정기능(심박수 측정 등), 시계 기능을 수행하는 손목 착용 배터리 구동 시계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최종호인 제9102.12-1000호에 분류(WCO 제72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23년.9월) 및 제2024년 제1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4.04.11.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4. Whey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Thermojetics performance protein powder;;U.S. - 품목분류2과-100709 (2004.07.02.)
물품 설명	대두분리단백질 75.05%, 농축유청단백질 24.50%, 향료(바닐라), 이산화규소 등으로 혼합 조제된 단백질 보충용 조제 식료품
HS CODE	-변경 전 : 제2106.90-9099호 (8%) -변경 후 : 제2106.10-9020호 (8%)
변경 사유	향료가 첨가된 단백질 함량 99% 이상인 분말상의 조제식료품은 제2106호의 조제식료품 중 단백질 농축물로 보아 제 2106.10-9020호에 분류(WCO 제70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22.9월) 및 제 2024년 제1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4.04.11.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한-미 철강 통관전문시스템 개통관련 미국 관보 게재

관세청(청장 고광효)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한국과 미국 양국이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에 대한 「전자문서교환시스템(eCERT*)」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측은 4.5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공포하고 4월중 본격 시행 계획을 게재했다.

* Electronic Certification System의 약자로, 통관상태, 승인수량 및 잔량 등을 양국에서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하도록 개선

전자문서교환시스템(eCERT)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의 쿼터·통관 관리를 위한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부정거래를 방지하고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무역 간소화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금번 도입 이후 한국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과 연계하게 된다. 동 시스템을 통해 철강협회가 발급한 수출 승인서가 전자문서 형태로 자동 송부되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이를 수입통관절차에서 수입신고서와 대조·검증하여 통관 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그 결과를 회신하여 준다.

전자문서교환시스템(eCERT)은 4.5일(현지시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Notice)에 공고된 이후 15일부터 45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동 시스템을 통해서만 통관이 이루어진다.

금번 시스템은 철강 통관 절차와 관련하여 미국과 세계 최초로 전자 문서 교환 시스템을 개통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미간 공급망 협력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양국의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수출입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미국의 우회수출 우려를 불식하는 유용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2. 중견기업, 2분기 수출생산투자 등 경기 흐름 개선 전망

- 「'24년 2/4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 발표
- 3분기 연속 수출, 내수, 생산, 설비투자 등 전망지수 상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는 4.12.(금) '24년 2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조사기간 및 대상) '24.2.26~3.11, 중견기업 800개社, (지수해석) 전망지수 100 이상 긍정, 100 미만 부정

조사 결과, 수출 98.1(0.5p ↑), 내수 91.9(1.4p ↑), 생산 98.0(1.4p ↑), 설비투자 99.4(0.2p ↑), 영업이익 89.9(2.1p ↑) 등 다수 지표에서 3분기 연속 직전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계경제둔화 및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경기 전반에 대한 전망(92.3, 0.4p ↓)은 직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수출】1차 금속·금속가공(100.6, 7.0p ↑), 기타 제조업(105.4, 9.5p ↑)이 긍정 전망으로 전환했고, 전자부품·통신장비(103.5), 식음료품(100.3), 도소매(101.2) 업종도 긍정 전망을 유지하는 등 수출 전망(98.1, 0.5p ↑)은 소폭 상승하였다.

【내수】내수(91.9, 1.4p ↑)는 식음료품(118.3, 15.7p ↑), 운수업(100.2, 12.9p ↑)에서 큰 폭의 긍정 전망 상승으로 직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생산·설비투자】생산(98.0, 1.4p ↑)은 식음료품(112.5, 10.0p ↑), 자동차(103.8, 3.9p ↑)가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설비투자(99.4, 0.2p ↑)의 경우, 1차 금속(103.9, 8.4p ↑), 자동차(100.5, 5.4p ↑)업종의 상승에 힘입어 생산·설비투자 모두 소폭 상승하였다. 전자부품(116.8, 13.1p ↓)도 직전 대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긍정 전망을 유지하였다.

【경영애로 요인】제조업(50.1%) 및 비제조업(53.7%) 모두 내수 부진을 가장 큰 경영애로 요인으로 응답한 가운데, 제조업은 원자재 가격상승(34.7%)을, 비제조업은 인건비 상승(44.0%)을 두 번째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24.1분기 우리 수출이 8.3% 증가한 가운데, 우리 중견기업의 수출, 생산, 투자 등 전망지수가 3분기 연속 상승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경기 전반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의 어려움도 여전히 지속되는바, 정부는 금융, 인력 등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금년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3.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 4월 17일(수) 국내 발효

-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 무역 경쟁력 향상 및 수출 활력 제고 기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이 4.17.(수)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18.(월)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협정상 발효 규정에 따라 30일 후인 4.17.(수) 국내 발효된다. 공급망협정은 지난 2.24.(토)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에 대해 먼저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이은 6번째 비준국이다.

공급망협정은 공급망 관련 최초의 다자간 국제협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시에는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의 협력을 추진하며, 공급망 위기 발생 시에는 즉시 14개국 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핵심광물 등 주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위기대응네트워크(CRN) : 공급망 위기 발생 시, 회원국이 요청하면 15일 내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수요-공급기업 매칭, 대체 운송경로 발굴 등 극복방안을 논의

**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4,000개를 상회(연 100만불 이상)하며('22년), 특히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80%를 상회('23년)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4. '관세 납세증명서' '정부24'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으세요!

관세청은 오는 4월 15일(월)부터 '관세 납세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정부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 수령, 내국인 해외이주신고, 외국인 체류허가 신청 시 관세(수입 시 부과되는 내국세 포함)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관세법 제116의3조)

그동안 관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23년 말부터 정부24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시스템 개선을 협의했고, 관세청과 행정안전부 간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정부24를 통한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추가로, 관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형태로도 관세 납세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민원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이션 서비스로 행정안전부가 '19년 개시

최현정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상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시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5. 오유경 처장, 화장품 수출 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 제조 현장 애로사항 청취 화장품 수출 다변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논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할랄 화장품 시장이 지속 성장*함에 따라 화장품 수출 다변화를 위해 할랄 등 국가별 특성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제조현장(코스맥스**, 경기도 화성 소재)을 4월 15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 세계인구의 24.7%(약 19억)에 해당하는 이슬람 할랄(HALAL) 시장(약 2조)은 지속 성장 중(연간 8.9% 규모, 산업부('24.9))

** 지난해 인도네시아 할랄 어워드에서 국내 기업 wchlch로 화장품 부문 최우수상 수상(할랄 제품 수 2,380개)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23년 화장품 수출액은 약85억 달러로 '22년 대비 약 6.4% 증가하였고, 올해 3개월 동안 23억 달러를 수출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1% 증가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며, 이는 여러 나라로 수출 시장을 개척한 업계의 노력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함께한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화장품은 자동차부품과 플라스틱 등을 제치고 중소기업 수출 1위를 기록했다”며 “국내 화장품 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국 중국 등의 화장품 규제 강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수출국 외에 할랄 시장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다양한 국가의 수요를 반영한 고품질 제품이 개발되어 K-뷰티가 글로벌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규제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화장품 GMP와 국제 ISO기준을 조화시키는 등 규제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6. 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 협력 강화

- 의약품 안전성, 유효성 등 각 기관이 보유한 비공개 정보 공유 가능
- 신속한 정보교환으로 위해정보에 신속 대응 용이
- 적극적인 규제외교 추진 글로벌 신뢰도 높이고 국내개발 의약품 수출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4월 25일(현지시간) 유럽 연합(이하 'EU')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의약품안전 규제기관인 EU 보건식품안전총국(이하 'DG SANTE') 및 유럽의약품청(이하 'EMA')과 한-EU 간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참석자 : 식약처장,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 차관, 유럽의약품청(EMA) 청장

식약처와 DG SANTE, EMA는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허가, 임상 시험 승인 등 의약품 안전성·유효성·품질 관련 정보 ▲이상사례, 위해정보 등 수집·모니터링·분석 정보 ▲시판 의약품 규제 정책 ▲실태조사, 회수, 위해성 평가 등 각 기관이 보유한 기밀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식약처와 EMA는 2020년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등 일부 의약품의 비공개 정보를 교환하는 임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으며, 2021년 3월부터는 비공개 정보에 대한 교환 범위를 의약품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해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고 정식 비밀유지 약정(안)을 마련하는 등 EU와 상호 협력해 왔다.

* 제9차 한-EU FTA 의약품·의료기기작업반 회의('21.3)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식약처는 DG SANTE, EMA와 신뢰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앞으로 의료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인정협정(MRA)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유럽 규제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의약품 품질문제 등 위해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식약처는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 수준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를 높여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유경 처장은 DG SANTE의 산드라 가이나(Sandra Gallina) 차관과 EMA의 이머 쿡(Emer Cooke) 청장을 만나 ❶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 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제안하고, ❷한-EU 규제기관이 함께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글로벌 규제를 정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미국(FDA), 사우디아라비아(SFDA) 등과 규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유럽 규제기관(DG SANTE, EMA)과 약정을 토대로 의료제품 글로벌 규제협력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국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글로벌 규제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7. 미·중·아세안,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견인

- 미국, 중국, 아세안 등 3대 주요 시장 수출 플러스 흐름 지속
- 제4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 개최 4월도 견조한 수출 증가세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7개월 연속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해 총력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6일(금) 오후 2시 30분 무역보험공사에서 제4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지역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맞춤형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24.1분기 수출은 미국(+15.5%), 중국(+4.3%), 아세안(+1.8%), 중남미(+21.6%)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며 전년대비 +8.3% 개선된 1,638억불을 기록하였다. 특히, 작년 역대 최대 수출실적(1,157억불, +5.4%)을 기록한 대미 수출은 자동차(+24.2%), 일반기계(+50.8%), 반도체(+188.3%)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1~3월 지속되면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하였다. 중국의 경우 글로벌 정보통신(IT)업황 개선이 반도체(+36.3%), 디스플레이(+26.2%) 수출 증가로 연결되면서, 1월·3월 수출 플러스, 2월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였다. 한편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16.5%), 석유화학(+13.8%), 무선통신기기(+11.9%)를 중심으로 증가흐름을 이어갔으며, 대중남미 수출도 일반기계(+20.1%), 석유제품(+68.6%)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요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정인교 본부장은 “올해 1분기에도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었다”고 평가하고 “4월에도 미국, 중국, 아세안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과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확고한 수출 이상향 기조가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신흥시장으로의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중동 사태 등 수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GCC·UAE(중동), 과테말라·에콰도르(중남미), 필리핀(아세안)과의 조속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아프리카·아시아 등 신흥시장 10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본격 추진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신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민관합동 수출비상 대책반(산업부,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무역협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8.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 관세청, 국가 핵심 수출산업인 자동차 품목분류(HS) 가이드 제작
-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에서의 관세 추징 예방 및 통관 지연 해소 목적

관세청은 4월 25일(목)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HS) 기준과 자동차 산업 최신 동향을 담은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품목분류(HS : Harmonized System)란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정한 관세, 무역, 통계 등 분야에서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는 상품 분류제도로서 6자리 품목번호(HS Code)가 협약을 통해 규정되고 6자리 아래 품목번호는 나라별로 상황에 맞게 운영(한국 10단위, EU 8단위, 미국 10단위 등)되고 있음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는 관세율을 결정할 뿐 아니라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및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신고한 품목분류를 상대 관세당국이 인정하지 않다면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세청은 자동차 산업의 수출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제작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산업으로, 기술 발전과 첨단 부품 출현으로 품목분류가 더욱 복잡해지고 국가 간 분류 이견도 많아 지침서(가이드북)의 중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번 지침 제작 과정에는 완성차·부품 제조업체, 자동차 관련 협회·학회·연구원 및 품목분류(HS)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함으로써 산·학·관의 목소리가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2부에서는 실제 거래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일반 내연기관 부품뿐 아니라 전장 부품, 친환경차 부품 등 총 242종에 대한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별 사진 및 설명을 상세히 수록해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제3부에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자율주행, UAM (Urban Air Mobility :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미래 자동차의 기술 동향과 발전 방향 등을 수록했다.

이번 지침은 ①디스플레이('22.9월), ②차전지('23.1월), ③반도체('23.4월)에 이어 관세청이 4번째로 제작한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이다.

관세청은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관세법령정보포털*에 이북(e-book)으로도 게시해 모든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 관세법령정보포털 누리집(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세계 품목분류(HS) > 품목분류(HS) 가이드

제작을 총괄한 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지침의 발간이 자동차 부품의 불명확한 품목분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해외에서의 관세 추징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관 지연을 해소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가 핵심 수출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9.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8종 신규 지정

- 영아연축 치료제, 임신 중 고혈압 치료제 등 지정 현재 총 416종, 456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30일 의약품 8종 성분(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416종 성분(456개 품목)이 운영된다.

* 보건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6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필요한 경우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가능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국가필수의약품은 영아연축* 치료제인 ‘비가바트린 정제’, 임신 중 급성 중증 고혈압 치료제인 ‘히드랄라진 주사제’ 등이다.

* 연축(spasm): 중심부 근육 등의 갑작스러운 수축으로 몸통, 목, 팔다리를 일시에 굽히거나 펴는 동작을 반복하는 발작

지정된 치료제는 소아 환자, 임산부 등에게 필수로 사용되나 대체 의약품(성분, 제형 등)이 제한적인 의약품으로, 최근 의료현장에서 수요·공급이 불안정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공급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의료현장과 적극 협력하고,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하여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